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6326 제안연월일: 2024. 12.

제 안 자 : 행정안전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발의자	발의일자	심 사 경 과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	박성훈의원 (2203909)	2024.09.11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2차 전체회의(24.11.20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(24.11.25.) 상정/의결(대안반영폐기)
	김종양의원 (2203991)	2024.09.12.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2차 전체회의(24.11.20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법안심 사 제2소위(24.11.25.) 상정/의결(대안 반영폐기)
	김종양의원 (2204080)	2024.09.19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2차 전체회의(24.11.20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(24.11.25.) 상정/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(2024.11.25.)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, 위 3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(2024.11.28.)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시·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 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활용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교통안전지표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·조사·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, 교통 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시·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 39조의2 신설),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해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 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(안 제160조제3항).
- 나.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·조사·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(안 제144조의2 신설),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제147조제7항신설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9조의2(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) ① 시·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관리청(「도로법」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한 자료(이하 "적재량 측정자료"라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적재량 측정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의 방법,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4조의2(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) ① 경찰청장은 지역별 교통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산정한 교통안전지표(이하 "교통안전지표"라 한다)

- 를 개발・조사・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결과를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.
- ③ 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⑦ 경찰청장은 제14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지표의 개발·조사·작성·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"를 "비디오테이프,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 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 <u>신 설></u>	재 정 안 제39조의2(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) ① 시·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관리청(「도로법」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.이하이 조에서 같다)에게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한 자료(이하 "적재량을 측정한자료"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적재량 측정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의 방법, 범위 등에 관한 사용기 없으면 항법, 범위 등에 관한 사용기 없으면 기를 제공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<u>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144조의2(교통안전지표의 조사

제147조(위임 및 위탁 등) ① ~ ⑥ (생 략) <신 설>

제160조(과태료) ① · ② (생략)

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,

및 활용) ① 경찰청장은 지역 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건 수와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산정한 교통안전지표(이하 "교 통안전지표"라 한다)를 개발・ 조사・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 표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공표된 결과를 교통정 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.
- ③ 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제147조(위임 및 위탁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 - ⑦ 경찰청장은 제14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지표의 개발·조 사·작성·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60조(과태료) ① · ② (현행 과 같음)
 - ③ -----

제6조제1항 · 제2항(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 한다), 제13조제1항 · 제3항 · 제 5항, 제14조제2항·제5항, 제15 조제3항(제61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7조 제3항, 제18조, 제19조제3항, 제 21조제1항 · 제3항, 제22조, 제2 3조, 제25조제1항·제2항·제5 항, 제25조의2제1항 · 제2항, 제 27조제1항 · 제7항, 제29조제4항 • 제5항, 제32조부터 제34조까 지, 제37조(제1항제2호는 제외 한다), 제38조제1항, 제39조제1 항 · 제4항, 제48조제1항, 제49 조제1항제10호 · 제11호 · 제11 호의2, 제50조제3항, 제60조제1 항·제2항, 제62조 또는 제68조 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,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 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· 2. (생 략)

비디오테이프, 그 밖의				
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				
정자료				
1 0 (귀체 키 기 0)				
1. · 2. (현행과 같음)				

④ (생 략)

④ (현행과 같음)